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민형배 · 안도걸 · 김문수
이개호 · 최혁진 · 양부남
문정복 · 정준호 · 김우영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와 범죄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u>안전관리</u>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u>안전관리와 범죄예방</u>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u>안전관리</u>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 <u>안전관</u> <u>리 및 범죄예방</u> ----- ----- ----- ----- -----.